

의안 번호	제3706호
----------	--------

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5년 10월 10일 김포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25년 10월 20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25년 10월 23일
- 라. 의 결 일 자 : 2025년 10월 23일

2. 제안이유

-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의무가 있으며,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.
-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시행에 따라 김포시 자원화센터 등 공공처리시설의 소각 용량을 초과하는 생활폐기물 잔여 물량에 대해 안정적인 처리가 불가피하므로 민간소각시설을 활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위탁기간 : 2026. 1. 1. ~ 2030. 12. 31.
- 나. 수탁자 : 1일 처리능력(허가용량) 50톤 이상 보유한 민간 소각업체
※ 2개사 이상 5개사 이하 업체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
(천재지변, 소각장 대정비, 기계고장 등 비상상황 대비)
- 다. 위탁방법 : 제한경쟁입찰(허가용량), 총액입찰(처리예정물량 × 처리단가)
- 라. 위탁사무 : 생활폐기물 중 공공 소각처리 초과 물량 약 30,000톤/년
민간소각시설에서 적정 처리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수정안의 요지 : 행정의 유연성과 위탁업체 관리·감독 강화를 위해
위탁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자 함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
9. 주문사항 : 없음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수정안 1부

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제3704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5. 10. 21.
제출자 도시환경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등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기간이 5년으로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, 기간 내 사업 성과 및 업체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하기 어려운 실정임. 이에 행정의 유연성과 위탁업체 관리·감독 강화를 위해 위탁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위탁기간 : “2026. 1. 1. ~ 2030. 12. 31.” 을
“2026. 1. 1. ~ 2026. 12. 31.” 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함.

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

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위탁기간 : “2026. 1. 1. ~ 2030. 12. 31.”을 “2026. 1. 1. ~ 2026. 12. 31.”로 한다.

동의안·수정안 비교표

동 의 안	수 정 안
2. 주요내용 가. 위탁기간: 2026. 1. 1 ~ 2030. 12. 31.	2. 주요내용 가. 위탁기간: 2026. 1. 1 ~ 2026. 12. 31.